

# 건축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10. 17, 건설교통부령 제35호

## 개정이유

건축사법(1995.1.5.법률 제4918호) 및 동법시행령(1995.9.2. 대통령령 제14759호)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설계도서의 범위에 토질의 조사 및 시험 등 지질조사 관계서류와 사용자제의 내역·명세서 등 건축자제품질관계 서류를 포함하도록 함(영 제3조)

나.외국의 건축사면허취득자도 국내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한 후 건축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신고절차를 정함(영 제12조의2)

다.건축사자격시험과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경력의 인정 기준을 정함(영 별표2)

라.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의 위법 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하여 처분의 형평성을 도모함(영 별표 3)

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본문 중 “(영 제2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로 한다)”를 “또는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사본”으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를 “건축사협회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지사”를 “건축사협회”로 하며, 동조제3항중 “도지사에게”를 “건축사협회에”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4호의2서식의”를 “제4호의2서식에 의한”으로, “도지사에게”를 “건축사협회에”로 하며, 동조제5항중 “도지사에게”를 “건축사협회에”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설계도서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라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공사비계산서·공사비명세서 등 공사비계산 관계서류
3. 토질의 조사 및 시험 등 지질조사 관계서류
4. 사용자제의 내역·명세서 등 건축자제품질 관계서류
5.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제4조의 제목을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응시원서 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영 제4조제1항 및 제3항”을 “영 제4조제1항”으로, “면허신청서 및 건축사자격 제1차시험 응시원서”를 “및 면허신청서”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교부등)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합격증발급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은 별지 제10호의2서식, 합격증발급대장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

제6조제1항중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각각 “면허증·면허수첩 또는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을 잃어버

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도지사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중 “영 제29조제1항”을 “영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또는 건축사예비시험응시수수료의 금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건축사보신고필증의 교부,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교부 등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의 신고 및 신고필증의 교부와 재교부의 경우: 2천원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재교부의 경우: 2천원
3.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재교부의 경우: 2천원
4. 법 제23조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 및 등록갱신의 경우: 2만원
5.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의 신고 및 신고필증교부의 경우: 2만원
6.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의 신고필증재교부의 경우: 2천원
7.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증재교부의 경우: 2천원

③ 제2항 각호의 수수료중 당해 사무가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임된 것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외국 건축사면허취득자의 신고) ① 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가 영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자격)증 사본
2.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② 건축사협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7호의 2서식에 의한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의한 신고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5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등록갱신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15조의 제목“(용역업자소속 건축사의 신고 등)”을“(엔지니어링활동주체소속 건축사의 신고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법 제25조제2항”을 “법 제23조제8항제2호”로 하며 동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3조제8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발전·제철·철강·조선·기계·비철금속·석유정제 및 화학·펄프 등의 공장건축물
2. 공항여객터미널
3. 고속철도역사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설기간중에 건축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운전 또는 관리에 필

요한 기계실·변전실·사무실·창고·휴게실 등 부속건축물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소속기관의 범위) 법 제23조제8항제3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은행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5. 임업협동조합중앙회
6. 중소기업진흥공단
7.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제17조제1항중 “용역업자소속 건축사신고필증”을 “엔지니어링활동주체소속 건축사신고필증”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건축사의 업무정지를 받은 자기”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을 받은날부터”로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노력과 시정여부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중 “법 제28조”를 “법 제28조1항”으로 한다.

제2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는 자기디스켓·광디스크·마이크로필름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26조 제목중 “보수교육계획”을 “연수교육계획”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보수교육”을 “연수교육”으로, “보수교육결과보고서”를 “연수교육결과보고서”로, “보수교육계획서”를 “연수교육계획서”로 하며, 동조 제2항중 “보수교육계획서”를 “연수교육계획서”로 하고, 동조제3항중 “보수교육결과보고서”를 “연수교육결과보고서”로 한다.

[별표 1]·[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의2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의2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0호의2서식]·[별지 제10호의3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의2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의2서식]·[별지 제17호의3서식]·[별지 제17호의4서식]·[별지 제17호의5서식]·[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19호의2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1호서식]·[별지 제23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7호서식]·[별지 제27호의2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조의2·제6조·제12조의2·[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제8조관련)

### 1. 건축사자격시험

과 목	출 제 범 위	출 제 방 법
건축법규	건축법 건축사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계획법 주차장법 건설기술관리법	필기(객관식을 원칙으로 한다)
건축설계	설계설명서 투시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단면상세도	실기

### 2. 건축사예비시험

과 목	출 제 범 위	출 제 방 법
건축구조	일반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구조역학	필기(객관식을 원칙으로 한다)
건축시공	시공일반 공사관리 건축재료 건축적산	
건축계획	단지계획 건축환경원론 건축계획각론 건축설비 건축사	

(별표 2) 경력의 인정기준(제9조관련)

경력산정 등급	경력구분	환산율
1등급	1.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중전의 규정에 의한 2급건축사로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경력을 포함한다) 2. 건설업법 또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감리전문회사, 기술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기술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지정 또는 등록된 시설안전기술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체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4. 대학원에서 건축분야에 관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에 있거나 이수한 경력(이 경우 석사 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5. 건축에 관한 교직경력(주 3시간이상의 시간강사 경력을 포함한다) 6. 각종 연구원등 연구기관에서의 건축에 관한 연구경력 7. 군의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장교로 복무한 경력	100퍼센트
2등급	1. 1등급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업체·기관·협회 등에서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2. 1등급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곳에서 건축관련분야(도시계획·조경·토목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업무에 종사한 경력 3. 대학원에서 건축관련분야에 관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에 있거나 이수한 경력(이 경우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건축관련분야 교직경력(주 3시간이상의 시간강사 경력을 포함한다) 5. 각종 연구원 등 연구기관에서의 건축관련분야에 관한 연구경력 6. 군의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사병으로 복무한 경력	80퍼센트
3등급	2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력으로서 건축 관련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60퍼센트

※ 비교

1. 경력인정기준일은 시험시행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2. 경력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경력에 산정하지 아니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정지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은 경력에서 제외한다.

(별표 3)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또는 건축사등의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제22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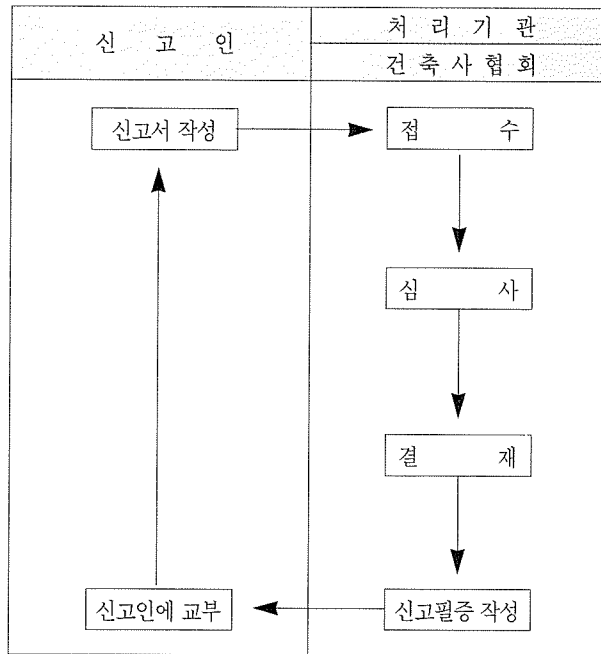
위반사항	처분 기준	
	건축사사무소 및 건축사	소속 건축사 및 건축사보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때	등록취소	업무정지 12월
2.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1년	업무정지 12월
3.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때	등록취소	
4.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등록취소	
5. 연 2회이상 건축사의 업무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을 통산하여 12월 이상이 된 때	등록취소	
6. 법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		
가. 타인이 작성한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때. 다만, 다른 법에서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1년	
나. 건축물을 기능상 지장이 있게 설계하거나 공사감리를 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업무정지 8월	업무정지 4월
다.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취소 등 처분내용을 지체없이 건축주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	업무정지 1월	
7.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기준의 상한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은 때		
가. 보수기준의 상한을 50퍼센트 이상 초과한 때	업무정지 3월	
나. 보수기준의 상한을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초과한 때	업무정지 2월	
다. 보수기준의 상한을 20퍼센트 미만 초과한 때	업무정지 1월	
8.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 등을 허위로 신고한 때	업무정지 5월	
9.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가.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업무정지 1년	
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업무정지 5월	

위반사항	처분 기준	
	건축사사무소 및 건축사	소속 건축사 및 건축사보
10. 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가.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잘 못함으로써 건축물이 건축법 제30조 또는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다음에 해당하는 때	(1)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업무정지 8월 (2) (1)외의 경우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4월 업무정지 1월
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잘 못함으로써 건축물이 건축법 제33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다음에 해당하는 때	(1)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업무정지 8월 (2) (1)외의 경우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4월 업무정지 1월
다.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잘 못함으로써 건축물이 건축법 제38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다음에 해당하는 때	(1) 건축물의 붕괴등 구조안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업무정지 1년 (2)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지장을 초래한 때 업무정지 8월 (3) (1) 및 (2)외의 경우 업무정지 4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4월 업무정지 2월
라.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잘 못함으로써 건축물이 건축법 제39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다음에 해당하는 때	(1)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업무정지 10월 (2) (1)외의 경우 업무정지 5월	업무정지 5월 업무정지 2월
마.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잘 못함으로써 건축물이 건축법 제42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다음에 해당하는 때	(1)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업무정지 8월 (2) (1)외의 경우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4월 업무정지 1월
바.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잘 못함으로써 건축물이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다음에 해당하는 때	(1)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업무정지 6월 (2) (1)외의 경우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잘 못함으로써 건축물이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다음에 해당하는 때	(1)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위반사항	처분 기준	
	건축사사무소 및 건축사	소속 건축사 및 건축사보
(2) (1)외의 경우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아.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잘 못함으로써 건축물이 건축법 제47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다음에 해당하는 때	(1)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업무정지 8월 (2) (1)외의 경우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4월 업무정지 1월
자.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잘 못함으로써 건축물이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다음에 해당하는 때	(1)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업무정지 8월 (2) (1)외의 경우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4월 업무정지 1월
차.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잘 못함으로써 건축물이 건축법 제50조·제51조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다음에 해당하는 때	(1)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업무정지 8월 (2) (1)외의 경우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4월 업무정지 1월
카.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잘 못함으로써 건축물이 건축법 제55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다음에 해당하는 때	(1)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업무정지 10월 (2) (1)외의 경우 업무정지 4월	업무정지 5월 업무정지 2월
다. 공사감리를 잘못함으로써 건축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다음에 해당하는 때	(1)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업무정지 8월 (2) (1)외의 경우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4월 업무정지 1월
파. 건축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업무정지 4월	업무정지 2월
하. 건축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중간보고서 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작성한 때	업무정지 5월	업무정지 2월
거.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불성실하게 한 때	(1) 위 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때 업무정지 1년 (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소홀히하여 건축물이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된 때 업무정지 5월 (3)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1월

위반사항	처분 기준	
	건축사사무소 및 건축사	소속 건축사 및 건축사보
을 소홀히하여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때		
나. 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도서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1) 설계도서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업무정지 2월	
(2) 설계도서 기타 서류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때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1월
더.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업무정지 2월	
11. 기타 제1호 내지 제10호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법 또는 건축법에 위반한 때	제1호 내지 제10호의 기준중 유사한 경우에 준한다.	제1호 내지 제10호의 기준중 유사한 경우에 준한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판례

### 건축사행정처분취소에 관한 건

전남 여수 소재 대전건축사사무소 대표 김태주 소장은 전남 도지사가 내린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에 대해 광주고등 법원에 행정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95. 9. 7 광주고 등법원 제1특별부(재판장 : 맹천호 판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건축사법(1995. 1. 5 법률 제4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고만 한다)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의 면허를 받고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89.2.11 여수시 문수동 2의 18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등록을 마치고 건축사의 업무를 하여오던 중 1994. 6.27부터 같은 해 9.26 까지 3개월간 건축사사무소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위 업무정지기간중에 소의 주식회사 대성환경의 건축물에 대하여 공사감리업무를 수탁하여 감리를 수행하는 등 모두 8건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탁하여 그 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1995. 2. 6 법 제5조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위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강제1호중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위 8건의 공사감리업무를 위 업무정지기간전에 수탁하여 이를 계속하여 수행(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건축사라 할지라도 법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명령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한 것이지 위와 같이 업무정지기간중에 새로 수탁하여 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제3, 4, 5호중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

하면 원고는 위 업무정지 명령이후 다시 1994.11.1부터 같은 해 12.14까지 1개월 15일간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10.29 피고에게 그 처분전에 계약을 체결한 수탁업무현황보고를 하면서 수탁업무현황표, 설계 및 감리계약서사본, 설계 및 감리수급대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중 감리(일반감리)수탁업무현황표, 감리계약서사본 및 감리수급대장에 원고가 위 업무정지기간중에 위와 같이 8건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탁하여 감리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위 업무정지기간중에 위 8건의 공사감리업무를 새로 수탁한 것으로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

그러나 강제4호중, 강제8호중의 1, 2, 강제9, 10호중의 각 1 내지 8, 을제6호중의 각 기재와 증인 가중현, 김동혁, 노현주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업무정지기간 전에 위 8건의 건축물 등에 대한 설계업무를 수탁하면서 그 공사감리업무도 함께 수탁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수탁당시 건축주들과의 사이에서 설계계약서만을 작성하여 두었다가 위와 같이 1994. 11. 1. 부터 1개월 15일간 업무정지명령을 받자 그 명령전에 계약을 체결한 수탁업무현황보고를 하려고 원고의 피용인인 소의 노현주로 하여금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위 노현주는 이를 작성하면서 당시 설계가 끝나 건축허가를 받은 위 8건의 건축물에 대하여 각 건축허가일에 감리계약을 한 것처럼 감리(일반감리) 수탁업무현황표, 감리계약서사본 및 감리수급대장을 작성한 사실(위 8건의 건축물 이외의 다른 건축물도 대부분 그 건축허가일에 감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작성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가 없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업무정지 기간중에 새로 위 8건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탁하고 감리를 수행하여 그 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업무정지기간중에 새로운 업무를 수탁하는 등 계속하여 그 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판결한다.